

2024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방법 안내

1. 관련 근거

- 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24160호)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
제3항 별표 1(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
[별표 1] 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조 제3항 관련)

3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
- 나.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: 적격 판정 2회 이상

2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 기준: 적격판정 2회 이상(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)

3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

- 가. 검사대상: 미용교육전공, 상담심리전공, 특수교육전공 재학생(2학기 이상)
- 나. 검사신청기간: **2024. 7. 29(월)~7. 30(화)**
- 다. 검사기간: **2024. 7. 31(수)~8. 1(목)**
- 라. 검사도구 및 방법

- 1) 검사 도구: 교육부 교직 적성·인성 검사 표준 도구안을 재구성

o 문항 수: 112문항

o 영 역: 총 14영역

- ① 문제해결력·탐구력 ② 판단력 ③ 독립성·자주성 ④ 창의·응용력 ⑤ 심리적 안정성 ⑥ 언어·의사소통능력 ⑦ 지도성 ⑧ 공감·포용력 ⑨ 지식·정보능력 ⑩ 봉사·희생·협동능력 ⑪ 계획성 ⑫ 성실성·책임감 ⑬ 소명감·교직관 ⑭ 열정

- 2) 검사방법: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검사(소요시간 15분)
- 3) 적격판정 점수: 백분위 환산점수 67점 이상

4. 부적격 판정자 처리 기준

- 가. 1차: 교직 적성 및 인성 관련 면담 실시
 - 1) 대상: 지필검사 결과 67점 미만인 자
 - 2) 면담자: 지도교수, 주임교수, 교직과정센터장
- 나. 2차: 재검사 실시

5. 시스템 접근 경로

- 가. 검사 신청: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로그인-교직-인적성검사 신청 ⇨
- 나. 검사 실시: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 로그인-교직-인적성검사 실시 ⇨

6. 유의사항

- 제한시간 15분 내에 필히 검사 완료해야 함
- 검사 시간 중 컴퓨터 꺼짐 현상 시: 다시 로그인 후 잔여 시간 동안 검사 실시 가능
- 검사 시간 중 **하단 닫기 버튼을 클릭 시 시험 완료**가 되므로 시험 완료 전까지 **닫기 버튼**을 절대로 클릭하면 안됨